

제 12-81-7 호

## 방사성동위원소사용신고필증

상 호 : (주)청룡환경

소재지 :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97-22 에이스테크노타워 5차 209호

대표자 : 윤정섭

생년월일 : 1943.05.31

방사성동위원소의 종류 및 수량 :

(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) Ni-63 : 370 MBq × 1, Ni-63 : 555 MBq × 2

사용목적 : 폐수중의 PCB 측정

사용장소 :

403호 유기분석실

신고일자 : 1987.02.23

위와 같이 원자력법 제65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신고를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.

2010년 5월 20일

### 교육과학기술부장



[ 원자력법령에 따라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대표자의 조치 의무 ]

1. 방사성동위원소사용변경신고( 별지 제58호 서식 ) : 변경 전에 신고
  - 신고량, 소재지( 이전 ), 사용장소 등이 변경된 경우
  - 근거규정 : 원자력법제65조제2항, 동법 시행령 제19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5조
2. 경미한사항변경신고( 별지 제8호 서식 ) : 변경 후 1개월 이내에 신고
  - 신고량 감소, 사업주체( 상호 및 대표자 ) 등이 변경된 경우
  - 근거규정 : 원자력법제6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0조
3. 허가등 취소사업(사용)폐지의 신고(별지 제100호 서식) : 폐지 후 1개월 이내에 신고
  - 신고량 전체를 양도 또는 위탁 폐기한 경우
  - 근거규정 : 원자력법제100조, 동법 시행령 제 3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4조

※ 상기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원자력법 제120조의2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해당됨